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19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형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C 답 62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12. 7. 접수 제61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D은 망 E의 자녀들로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 등 및 D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10712호로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26. “원고는 피고 등에게 구미시 C 답 6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2. 1. 26.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등은 각 나머지 청구를, D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21. 9. 30.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241분의 2499.17355지분에 관하여 2020.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등은 2021. 12. 7. 이 사건 토지 중 각 6241분의 624.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¹⁾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조정기일에 원고 대신 참석한 원고의 자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자신들이 받을 지분을 D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증여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모두 마쳤다.

그러함에도, 피고 등은 이미 그 이행이 이루어져 집행력을 상실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후에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당시 조정기일에 원고 대신 참석한 F는 “자신들이 받을 지분을 D에게 이전해 달라는 요청은 선정자 G로부터 들었고, 나머지 피고 등도 이렇게 이야기하였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한 점, 이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증여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D을 4차례나 만났는데,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피고 등에게 확인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조정기일에 이 사건 조정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서면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조정 기일에 참석한 D은 F와 배치되는 증언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범준

별지

1) 등기원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 26. 상속재산분할’로 되어 있다.